

서울특별시-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

의 안 번 호	2657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
- 나.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'25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
- 나.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'25년도 추경예산(300백만원) 편성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정원도시국 조경과 장재원(☎2133-2111)

(앞 쪽)

서울시-부산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'24.8월에 체결한 서울특별시-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의 일환으로 2025년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정원관련 행사장 내 상호 우호교류 정원 조성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5년, 1년으로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지출	○ 서울정원 조성	300,000	-	-	-	-	300,000
	소계(a)	300,000	-	-	-	-	300,000
수입	○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300,000	-	-	-	-	300,000

※ 부산시에서 보라매공원에 부산정원 조성 예정(300백만원)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국비		-	-	-	-	-	-
시비	자체재원	300,000	-	-	-	-	300,000
	지방세수입	-	-	-	-	-	-
	세외수입	-	-	-	-	-	-
	지방채 등	-	-	-	-	-	-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300,000	-	-	-	-	300,000

5. 덧붙이는 의견

- 본 비용추계는 서울시 조경분야 사업대상지 조사지침 등을 적용하여 작성함
- 추후 사업추진 시 계획안에 따라 상세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- 담당과장 : 조경과장 유혜미(☎2133-2100)
- 담당팀장 : 조경협력팀장 김승렬(☎2133-2107)
- 담당자 : 장재원(☎2133-2111)

Ⅱ 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산출식	금액(원)	비고
합계		300,000,000	
설계	22,000,000원 × 1식	22,000,000	
정원조성	278,000,000원 × 1식	278,000,000	
식재기반조성	30,000원 × 360㎡	10,800,000	
교목	400,000원 × 30주	12,000,000	
아교목	250,000원 × 60주	15,000,000	
관목	7,000원 × 6,000주	42,000,000	
초화	7,000원 × 10,000본	70,000,000	
경계석	50,000원 × 150m	7,500,000	
의자	500,000원 × 10개	5,000,000	
포장	68,000원 × 140㎡	9,520,000	
테크	250,000원 × 30㎡	7,500,000	
정원안내판	2,500,000원 × 2개	5,000,000	
수목표찰	10,000원 × 50개	500,000	
앉음벽	400,000원 × 30m	12,000,000	
상징물	20,000,000원 × 1개	20,000,000	
파고라	15,000,000원 × 2개	30,000,000	
경관조명	20,000,000원 × 1식	20,000,000	
기타	11,180,000원 × 1식	11,180,000	수목이식,철거,가림막웁스 등

서울특별시-부산광역시

“우호 교류정원 조성” 협약서

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(이하 “양 도시”라 한다)는 2024년 8월 23일자로 체결한 ‘서울특별시-부산광역시 상생협력 업무협약’ 체결에 따라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,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’와 ‘2025부산가든쇼’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.

1.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.
2. 부산광역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, 이후 운영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.
3. 서울특별시의 부산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부산광역시가,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.

제3조(협약서의 변경)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,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의 효력)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기타사항)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,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.

2025년 월 일



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



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

부산광역시-서울특별시 “우호 교류정원 조성” 협약서

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(이하 “양 도시” 라 한다)는 2024년 8월 23일자로 체결한 ‘부산광역시-서울특별시 상생협력 업무협약’ 체결에 따라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,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‘2025부산가든쇼’와 ‘2025서울국제정원 박람회’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.

1.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.
2. 서울특별시의 부산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부산광역시가,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.
3. 부산광역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, 이후 운영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.

제3조(협약서의 변경)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,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.

제4조(협약의 효력)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기타사항)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에 증명하고,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.

2025년 월 일



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



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
